

교원성과급지급규정

제정 : 2014.03.01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17.05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02.08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2.12.01

개정 : 2023.10.16

개정 : 2024.03.0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 라 함)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03.01.>

제2조(성과급의 권한과 대상) ①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.

②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본교 소속의 교원으로 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성과급” 이라 함은 「교원업적평가 규정」에 따라 교원에게 교원업적평가의 결과로 지급하는 금전 및 비금전적 성과급을 말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2. <삭제 2021. 02. 08.>

3. “교원” 이라 함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교원을 말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4조(평가대상의 기간) 교원의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대상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며, 당해연도(3월 1일자) 교원업적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. <개정 2017. 05. 01., 2021.12.01.>

제5조(예산편성 및 집행) 성과급 예산은 교비회계로 집행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) ① 성과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과급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성과급 지급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교비회계 성과급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3. 성과급 지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4. 성과급 지급기준 및 방법, 지급액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성과급에 관한 주요 사항 <개정 2021. 12. 01.>

③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.

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④ 위원은 사무처장, 입학학생취업처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 3인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.

제2장 교원의 성과급

제7조(성과급 지급액) 성과급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8조(성과급 지급방법) 성과급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금전적 성과급 : 현금, 수표, 기타 쉽게 통화로 통용될 수 있는 형태의 금전적 성과급
2. 비금전적 성과급 : 교원인사, 해외연수, 특별휴가 등의 비금전적 성과급

제9조(성과급 지급 제외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교원업적평가규정 제2조제2항제1호 교원 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>
2. 성과급 지급 기준일 현재 교원 신분을 상실한 교원
3. 평가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휴직한 교원. 다만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에 따른 직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>
4. 평가대상기간 중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교원
5. <삭제 2024.03.01.>
6. <삭제 2024.03.01.>

② 성과급 지급의 목적 또는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.

제10조(성과급 지급 기준일) 성과급 지급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자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<개정 2017.05.01., 2021.12.01.>

제11조(성과급 지급기준) ①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목적 또는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② 성과급은 「교원인사평정규정」에 따른 평정결과를 [별표1]의 반영비율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산출하고 [별표2]의 비율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한다.
③ 성과급 지급액은 [별표3]의 평가등급별로 지급하되 필요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④ 교원 성과급 지급 대상에 연속 2회 이상 S등급 선정 시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0.03.01.> <개정: 2022.12.01.>

제3장 보 칙

제12조(주관부서) 교원 성과급에 관한 각종 업무의 주관부서는 교무처 교무팀으로 한다.
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>

제13조(비밀유지의 의무) 업무지원 담당자는 성과급 지급에 있어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4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교원 성과급 지급에 필요한 사항들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평가대상의 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2018년도 교원성과급 지급 대상자 선정에 한하여 2017. 3. 1일자 및 2018. 3. 1일자 성과급 평가 반영 비율표(별표 1)에 의한 총점의 합을 평균한 값으로 산정하며, 학과구조조정 대상학과는 당해연도(2017년 자료) 선정 결과를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성과급 평가 반영 비율표

구 분	평가 반영비율	
	교원업적평가(학과평가)	교원업적평가(교원개인평가)
교 원	50%	50%

※ 학과평가 및 교원업적평가 적용기준은 당해년도 3.1일자 평가 자료를 사용한다.

[별표 2] 평가성과급 등급 기준표

평가등급	평가등급 비율
S등급	10%
A등급	20%

비고 :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사한다.(상위 평가등급 비율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인원에서 상위 평가등급 인원을 제외하여 인원을 계산한다)

[별표 3] 평가성과급 지급액

구 분	평가등급별 지급액	
	S	A
교 원		